

# 연금저축계좌 핵심설명서

## 연금저축계좌 핵심 설명서

### 1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

| 구분     | 내용  |
|--------|---|
| 상품 특징  | - 계좌에 일정 기간 납입 후,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 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%까지 소득공제<br>- 한편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(연금수령 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|
| 연금수령   |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,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|
| 수령한도   | 연금계좌의 평가액/(11-연금수령연차) × 120%  |
| 연금외수령  |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)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 |
| 가입대상   | 제한 없음   |
| 가입금액   | 매회 1만원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,800만원 이내(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  |
| 소득공제   |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% (한도 400만원)   |
| 보수,수수료 |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(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)  |
| 계좌 이체  |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 |
| 계좌 승계  |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 |

### 2 연금저축계좌 세제제도

| 구분   | 납입시     | 연금외수령시     | 연금수령시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세제종류 | 소득공제 혜택 | 기타소득세(22%) | 연금소득세(5.5~3.3%) |

- ※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
- ※ 연간 연금소득금액(국민연금 등 제외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- ※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은 연금외수령시 납입시 기 계산된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, 연금수령시에는 3.3%의 세율을 적용합니다.
- ※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 3 연금저축계좌 특징

- 상품 개요
  - 계좌 내 펀드의 운용성과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실적에 따라 연금수령액이 변동
  - 가입자는 매년 1,800만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매회 1만원 이상 자유적립 가능(연금수령 개시 이후에는 납입 불가)
  - 가입자는 계좌 내에서 다양한 상품군의 펀드를 금융상황 변동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투자 가능
  - 납입액 중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금액(과세제외금액)은 중도에 일부 인출하더라도 세제상 불이익 없음
- 연금지급 : 연금수령시점의 적립액을 재원으로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익자가 선택한 연금지급주기에 따라 연금을 지급
- 연금계좌의 평가액
  - 산정기준 : (계좌 내 각 펀드별 공고·게시된 기준가격 × 보유 좌수의 총 합계액) + 계좌 내 현금 보유금액
  - 각 펀드별 기준가격은 공고·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그 공고·게시일 전날의 집합투자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여 매일 공고·게시
- 해지시 수령금액 : 계약 해지시 받는 금액은 적립액에서 기타소득세 부과 등으로 이미 납입한 투자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

### 4 가입시 유의사항

-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전에 투자대상, 환매방법, 보수 등에 관한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.
-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아니하며, 집합투자기구의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, 연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당사에 연금수령개시 신청을 하셔야 연금수령이 개시될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(www.bnkfn.co.kr) 및 협회(www.kofia.or.kr.)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# □ 가입시 유의사항

## 연금저축 가입시 유의사항

### 1 연금저축 제도개요

| 구 분     | 내 용  |
|---------|--|
| 상품 특징   | - 계좌에 일정 기간 납입 후,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,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%까지 소득공제<br>- 한편,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(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)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|
| 연금수령    | 가입후 5년 경과 및 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,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 |
| 연금수령한도  | 연금계좌의 평가액/(11-연금수령연차) × 120%   |
| 연금외수령   |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(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)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|
| 가입대상    | 제한 없음  |
| 가입금액    | 매회 1만원 이상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,800만원 이내(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)   |
| 소득공제    |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% (한도 400만원)  |
| 보수, 수수료 |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(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)   |
| 계좌 이체   |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|
| 계좌 승계   |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|

### 2 금융권역별 상품특징

| 구 분    | 연금저축신탁     | 연금저축펀드     | 연금저축보험 |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|
| 취급기관   | 은행         | 펀드 판매사     | 생명보험사  | 손해보험사    |
| 납입방식   | 자유납(1만원 ↑) | 자유납(1만원 ↑) | 정기납    | 정기납      |
| 연금형태   | 확정         | 확정         | 종신, 확정 | 확정(~25년) |
| 예금자보호법 | 적 용        | 적용되지 않음    | 적 용    | 적 용      |

### 3 연금저축 세제제도

| 구 분  | 납입시     | 연금외수령시     | 연금수령시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세제종류 | 소득공제 혜택 | 기타소득세(22%) | 연금소득세(5.5~3.3%) |

※ 매년 불입금중 年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

※ 연간 연금소득금액(국민연금 등 제외)이 1,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※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### 4 가입시 유의사항

-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금융회사(www.bnkfn.co.kr) 및 협회(www.kofia.or.kr)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, 수수료,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